

신단체취급특약 약관

- 제 1조 【특약의 적용범위】
- 제 2조 【특약의 소멸】
- 제 3조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제 4조 【대표자의 선정 및 권한의 제한】
-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6조 【보험요율의 적용】
-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 제 8조 【계약자의 보험료 전액 부담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및 보험료의 정산】
- 제 9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명부】
- 제 10조 【적용상의 특칙】
- 제 11조 【준용규정】

신단체취급특약 약관

신단체취급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① 주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변호사회, 의사회 등)
3. 회원단체 : 제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하고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정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고 그 회원명부에 등재 또는 서면에 의한 가입 의사 표시에 의해 구성된 단체(동호회, 동문회, 카드사 회원, 온라인 사업체 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 다만,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제외한다.
4. 다수구매자집단 : 상품판매자가 자신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집단

②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 단체에 소속한 주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 소속원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가 단체 유형별로 다음의 인원수(이하 "단체별 최소인원수"라 합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제1,2종 단체 : 5인
2. 회원단체 : 20인
3. 다수구매자집단 : 500인

제 2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였을 때.

2. 계약자가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신용카드납입 또는 자동이체납입으로 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가 단체별 최소인원수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단체별 최소인원수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당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에 대해서는 이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조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제2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특약은 소멸되며, 탈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중인 때에는 주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부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단체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4조 【대표자의 선정 및 권한의 제한】

①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② 대표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대표하여 계약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표자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별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 6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단체와 회사의 협약에 따라 단체의 소속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신용카드납입가입 또는 자동이체납입가입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납입가입 또는 자동이체납입가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용대금 영수증 또는 자동이체통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계약자의 보험료 전액 부담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및 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감소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이때 발생되는 환급금과 세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보험료는 일단위로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 동안 매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중 계약자는 회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 9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명부】

계약자는 항상 보험대상자(피보험자)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요구할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조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 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